

接待費 關聯稅制의 政策方向

1997. 12.

孫 元 翼

KIPF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최근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로 우리 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企業의 진정한 경쟁력은 公正한 競爭(fair competition)이 보장되는 市場에서만 강화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품의 質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의 인간관계, 학연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거래당사자간의 인간관계는 주로 接待의 수단을 통하여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接待行爲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관행화되었으며, 거의 모든 거래에서 접대를 주고 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접대의 관행이 점점 심화되면서 기업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社會問題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간의 접대뿐만 아니라 企業의 政府에 대한 접대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접대는 주로 인·허가, 공사수주, 물품납품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의 접대는 뇌물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고, 그 반대급부로 인·허가 등이 부실화되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반복되는 접대관행은 접대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접대경쟁을 유발하여 접대수준이 점점 고급·사치화되어 접대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는 私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사회전체로서는 사치성 향락산업의 비정상적 팽창을 조장하여 여러 가지 社會的 費用(social costs)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接待行爲에 대해 세제상 損

金算入을 許容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社會적으로 公同된 인식 하에 損金算入 限度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本 研究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接待費 관련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접대관행이 야기하는 社會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長・短期 政策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孫元翼 博士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本 報告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두 분의 평가자에게 감사하며, 本 研究의 자료분석 및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宋恩珠 研究員, 崔美英 研究助員과 出版課 職員들의 노고에도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적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1997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金 仲 秀

目 次

I. 序 論	9
II. 企業의 接待費 支出 現況	11
III. 接待行爲의 經濟的 效果	24
1. 理論的 分析	24
2. 實證的 分析	28
IV. 接待費 關聯稅制	32
1. 接待費의 範圍	32
2. 接待費 등의 損金算入制度	33
3. 接待費支出明細書制度	42
4. 信用卡 使用義務制度	44
5. 最近 稅法改正의 效果	49
V. 外國의 接待費 關聯稅制	54
1. 美國	54
2. 日本	55
3. 英國	62
4. 臺灣	62
5. 各國의 接待費 關聯稅制 比較	63
VI. 結論 및 政策方向	66

1. 長期的 政策方向	66
2. 短期的 政策方向	70
3. 政策組合(Policy Mix) 및 期待效果	72
參考文獻	74
附錄 1. 不動產業, 消費性서비스業의 範圍	75
附錄 2. 接待費 調整明細書	77

表 目 次

〈表 II - 1〉接待費 比率別 企業分布	12
〈表 II - 2〉業種別 平均 接待費 比率	13
〈表 II - 3〉企業規模別・業種別 平均 接待費 比率	15
〈表 II - 4〉接待費 比率別 企業 分布	15
〈表 II - 5〉業種別 平均 接待費 및 損金限度 超過額	17
〈表 II - 6〉接待費 限度超過率別 企業數	19
〈表 II - 7〉賣出額 및 接待費 增加率 推移	20
〈表 II - 8〉接待性 經費의 支出 現況	21
〈表 II - 9〉業種別 接待性 經費의 損金限度超過率	22
〈表 II - 10〉政府投資機關과 一般企業의 接待費支出 比較	23
〈表 III - 1〉實證分析 標本의 構成(1995)	29
〈表 III - 2〉接待費와 産業間의 關係(回歸分析 結果)	30
〈表 IV - 1〉接待費 損金認定 限度額 比較	35
〈表 IV - 2〉接待費 損金限度의 變更 推移	49
〈表 IV - 3〉稅法改正에 따른 損金限度額 縮小效果(1995~1997)	51
〈表 IV - 4〉1997年 稅法改正에 따른 損金限度 縮小效果 (1998~2000年)	53
〈表 V - 1〉日本의 交際費關聯 稅制 沿革	60
〈表 V - 2〉日本의 業種別 交際費 支出額 및 賣出額對比率 (1991~1994年)	61
〈表 V - 3〉臺灣의 交際費 損金算入 限度	63
〈表 V - 4〉各國의 接待費 關聯 制度	64

圖 目 次

〔圖 Ⅲ－1〕 接待行爲의 經濟的 效果 I	26
〔圖 Ⅲ－2〕 接待行爲의 經濟的 效果 II (接待水準의 縮小)	27
〔圖 Ⅲ－3〕 接待行爲의 經濟的 效果 III ($E_s=0$)	27

I. 序 論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接待費를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損金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기술개발이나 상품의 질적 개선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뇌물이나 로비활동을 통해 영업하려는 관행을 초래하여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공영수증에 의한 비자금 조성으로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과도한 접대비 지출로 향락산업과 사치성 서비스업이 팽창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지나친 高級・奢侈性 接待費 지출에 대하여 세제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公平課稅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로비활동에 의해 영업활동을 하기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사회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접대비지출의 손금산입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접대비 過多支出 法人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편으로 기업 스스로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誘因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접대수요를 축소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접대수요는 크게 기업 자신과 각종 행정규제의 수단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스스로의 自淨努力이 요구되며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으로부터 접대의 이유가 되는 각종 規制의 과감한 緩和 및 廢止가 요구된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公企業의 막대한 접대성 경비의 지출도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의 경제적・비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과감히 축소되

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제수지 악화와 경제기반이 흔들리던 시기에 交際費의 損金不算入制度를 도입한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本 報告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接待費 支出現況을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파악하고, 공기업에 대한 접대비 지출현황도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접대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론분석을 통하여 접대행위의 외부효과를 규명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접대비와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제Ⅳ장에서는 접대비와 관련된 현행세제와 세제의 변화내역을 손금산입한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제Ⅴ장에서는 외국의 接待費 關聯稅制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세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Ⅵ장에서는 本 報告書의 結論으로 接待費 關聯稅制가 나아가야 할 長期的 政策方向과 구체적인 短期的 政策方案을 제시한다.

Ⅱ. 企業의 接待費 支出 現況

우리나라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決算財務諸表 上の 접대비¹⁾지출 현황을 살펴본다. 분석대상은 上場·登錄·外監法人 으로 하며, 이 중 金融業²⁾과 接待費 등이 파악되지 않는 기업, 결산기 변경기업은 제외하였다. 1994년은 7,372개 기업 중 결산기 변경기업 34개, 매출액 또는 접대비가 0이거나 파악되지 않는 기업 642개, 1997년 9월 현재 존속하지 않는 66개 기업을 제외한 6,6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가운데 상장법인이 623개, 등록법인이 2,177개, 외감법인이 3,830개이다. 1995년은 7,077개 기업 중 결산기 변경기업 21개, 매출액 또는 접대비가 0이거나 파악되지 않는 기업 279개, 1997년 9월 현재 존속하지 않는 514개 기업을 제외한 6,263개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상장법인이 618개, 등록법인이 2,017개, 외감법인이 3,628개이다.

매출액에서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 기업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매출액에 비추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평가해 본다. <表 Ⅱ-1>은 1994년과 1995년의 접대비 비율별 해당기업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접대비 비율이 0~0.3%인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체의 34.2%, 33.5%를 차지하고 있다. 접대비 비율이 1%가 넘는 기업, 즉 1000원의 매출을 위해 10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도 각 연도에 13.8%인 915개, 865개 기업

1) 재무제표상의 접대비와 기밀비 합계액을 접대비로 함.

2) 금융업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증권투자신탁 등 각 기관별로 정하여진 모집권유비, 매출권유비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에 한해서 일정범위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의 초과액은 접대비로 간주하므로 그 산출과정이 비금융업과 차이가 있음.

으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기업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구간은 0.2~0.3% 구간이며 전체의 15%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0.1%에서 0.5% 구간에 속하는 기업이 전체의 53%이므로 분석대상 기업 중 과반수가 매출액의 0.1에서 0.5% 사이의 접대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4년과 1995년 간에 특징적인 변화는 없으며, 각 구간별 분포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I - 1〉 接待費 比率別 企業分布

(單位: 個, %)

접대비 비율	1994		1995	
	기업수	누적구성비	기업수	누적구성비
0 ~ 0.1	387	5.8	342	5.5
0.1 ~ 0.2	867	18.9	822	18.6
0.2 ~ 0.3	1,017	34.2	933	33.5
0.3 ~ 0.4	892	47.7	837	46.9
0.4 ~ 0.5	760	59.2	749	58.9
0.5 ~ 0.6	580	67.9	567	68.0
0.6 ~ 0.7	437	74.5	417	74.7
0.7 ~ 0.8	328	79.5	322	79.8
0.8 ~ 0.9	274	83.5	239	83.6
0.9 ~ 1	173	86.1	170	86.3
1 이상	915	100.0	865	100.0
전 체	6,630	100.0	6,263	100.0

註: 接待費 比率 = (接待費 / 賣出額) × 100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諸表』, 1994~1995.

접대비는 업종의 특성과 기업의 성장단계 및 영업활동 여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접대비의 지출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창업기업 역시 기존의 기업에 비해 접대비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독과점기업 등은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접대비 지출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업종별로는 일반적

으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이 접대비 지출이 많은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분포보다는 업종별 또는 기업규모별 평균 비율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表 II-2〉에서는 각 업종별 평균 접대비 비율과 전체 평균 접대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법인의 접대비 비율은 1994년, 1995년 각각 1.63%, 2.11%로 1994년에 비해 1995년에 지출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4년 세법개정으로 손금한도액 산출기준이 자본금의 2%에서 자기자본의 2%로 변경되어 손금한도가 어느 정도 증가함에 따라 접대비 지출 역시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의 평균 접대비 비율이 16.78%로 다른 산업의 비율이나 전년도의 4.89%에 비해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부 업종의 일시적인 변동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表 II-2〉業種別 平均 接待費 比率

(單位:個, %)

업 종	1994		1995	
	기업수	접대비 비율	기업수	접대비 비율
농 업 · 수 립 업	19(0.3)	0.90	21(0.3)	1.03
어 업	31(0.5)	0.43	26(0.4)	0.48
광 업	51(0.7)	0.77	45(0.7)	0.96
제 조 업	3,946(59.5)	0.58	3,733(59.6)	0.97
전 기 · 가 스 · 수 도 사 업	35(0.5)	0.76	33(0.5)	0.58
건 설 업	1,087(16.4)	5.07	974(15.6)	2.58
도 소매 · 소비자용품수리업	575(8.7)	0.52	551(8.8)	0.48
숙 박 · 음 식 점 업	129(1.9)	1.33	124(2.0)	1.62
운 수 · 창 고 · 통 신 업	237(3.6)	0.94	230(3.7)	1.70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358(5.4)	4.89	351(5.6)	16.78
교 육 서 비 스	1(0.0)	0.97	1(0.0)	1.21
보 건 · 사 회 복 지	2(0.0)	0.41	—(—)	—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	159(2.4)	2.90	174(2.8)	1.47
전 체	6,630(100.0)	1.63	6,263(100.0)	2.11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諸表』, 1994~1995.

業種別로 보면 1994년에는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의 4개 업종만이 1%를 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7개 업종이 1%를 초과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접대비 지출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은 4.89%에서 16.78%로, 운수·창고·통신업은 0.94%에서 1.70%로 그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건설업은 5.07%에서 2.58%로,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2.9%에서 1.47%로 전년도에 비해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表 II-2〉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출액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에서부터 1백만원 정도인 소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업종별 특성을 비교할 수는 있으나 기업 규모에 따른 특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 즉 기업규모별 접대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表 II-3〉에 의하면 1994년에 상장법인은 0.41%, 등록법인은 0.62%, 외감법인은 2.41%로 규모가 작을수록 접대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95년 역시 상장·등록법인은 前年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외감법인의 경우는 3.2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表 II-2〉와 연결해서 보면, 1995년에 전년도에 비해 전체 평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소규모법인의 접대비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동종 업종 내에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았고 가장 비율이 높은 업종은 1994, 1995년에 각각 5.83%, 20.55%로 나타난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외감법인이다.

〈表 II-4〉는 접대비 비율별 해당법인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법인의 접대비 비율은 전 구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은 법인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은 0.2~0.3%로 1994년은 전체의 15.3%, 1995년은 14.9%가 이에 해당한다. 30대 기업이란 매출액 기준 상위 30개 기업으로서 1994년에 17개, 1995년에는 20개 기업이 0~0.1%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30개 기업 모두 0.3% 이하의 접대비 비율을 나타내고 있

〈表 II-3〉企業規模別・業種別 平均 接待費 比率

(單位: %)

업 종	1994			1995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
농 업 · 수 립 업	—	1.07	0.61	—	1.31	0.77
어 업	0.19	0.32	0.50	0.25	0.50	0.51
광 업	0.47	0.81	0.77	0.44	1.07	0.91
제 조 업	0.44	0.59	0.62	0.43	0.58	1.40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0.18	0.85	0.86	0.17	0.66	0.65
건 설 업	0.25	0.39	7.30	0.25	0.48	3.62
도소매 · 소비자용품수리업	0.27	0.55	0.53	0.27	0.40	0.53
숙 박 · 음 식 점 업	0.32	0.98	1.54	0.41	1.00	2.00
운 수 · 창 고 · 통 신 업	0.33	0.92	1.01	0.31	1.00	2.17
부동산 · 임대 · 사업서비스	0.27	0.99	5.83	0.48	1.09	20.55
교 육 서 비 스	—	—	0.97	—	—	1.21
보 건 · 사 회 복 지	—	—	0.41	—	—	—
기타공공사회 · 개인서비스	2.02	3.94	2.79	2.08	3.48	1.26
전 체	0.41	0.62	2.41	0.40	0.62	3.23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諸表』, 1994~1995.

〈表 II-4〉接待費 比率別 企業 分布

(單位: 個, %)

집대비 비율	1994		1995	
	전체기업	30대기업	전체기업	30대기업
0~0.1	387(5.8)	17(56.7)	342(5.5)	20(66.7)
0.1~0.2	867(13.1)	12(40.0)	822(13.1)	10(33.3)
0.2~0.3	1,017(15.3)	1(3.3)	933(14.9)	—
0.3~0.4	892(13.5)	—	837(13.4)	—
0.4~0.5	760(11.5)	—	749(12.0)	—
0.5~0.6	580(8.7)	—	567(9.1)	—
0.6~0.7	437(6.6)	—	417(6.7)	—
0.7~0.8	328(4.9)	—	322(5.1)	—
0.8~0.9	274(4.1)	—	239(3.8)	—
0.9~1	173(2.6)	—	170(2.7)	—
1 이상	915(13.8)	—	865(13.8)	—

註: () 안은 비중임.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諸表』, 1994~1995.

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접대비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접대비 지출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매출액 규모가 작은 법인은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접대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매출액에 비례하는 정도로 접대비 지출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1996년 세법개정 이전까지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손금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은 실제 지출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손금한도가 너무 크게 설정되어 접대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각 법인의 접대비 지출 실태에 따른 업종별, 규모별 현황을 매출액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그러면 각 법인이 지출하고 있는 접대비는 어느 정도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손금한도액을 산출하고 손금한도초과액 및 손금한도초과율을 보고자 한다.

손금한도액은 基本金額과 資本金基準金額, 賣出額基準金額으로 구성된다. 1994년과 1995년 적용 세법에 의하면, 기본금액은 일반기업 6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이며, 매출액 기준금액은 일반법인 0.15%, 중소기업 0.3%를 적용한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0.05%를 적용하였다. 자본금기준은 1994년의 경우 자본금의 2%, 1995년의 경우 자기자본의 2%로 하고 있다.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손금한도 산출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 판정여부는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 第2條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은 종업원 수 또는 자산규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건설업은 200인 이하, 도소매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은 20인 이하, 기타 업종은 300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의 손금한도를 적용하였다.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접대비에서 세법에 의해 산출된 각 기업의 손금한도액을 차감한 것이 한도초과액이다. 접대비란 기업 결산 재무자료에 의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처리된 접

대비와 기밀비, 제조경비로 처리된 접대비와 기밀비를 합한 금액이다. 限度超過率이란 업종별 접대비 지출액에서 한도초과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법인이 현행 세제에 의한 손금한도액을 어느 정도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업종별 평균 접대비와 1994, 1995년 적용세법에 의해 산출한 업종별 손금한도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율을 나타낸 것이 <表 II -5>이다.

<表 II -5> 業種別 平均 接待費 및 損金限度 超過額

(單位 : 百萬元, %)

업 종	1994				1995			
	접대비	손금 한도액 ¹⁾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율 ²⁾	접대비	손금 한도액 ¹⁾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율 ²⁾
농 업	122	105	17	13.9	138	100	39	28.3
어 업	83	110	-27	-32.5	121	129	-8	-6.6
광 업	69	80	-11	-15.9	96	115	-19	-19.8
제 조 업	160	165	-5	-3.1	194	213	-18	-9.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15	552	-336	-156.3	267	672	-405	-151.7
건 설 업	127	162	-35	-27.6	159	193	-34	-21.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84	295	-111	-60.3	223	350	-126	-56.5
숙박 및 음식점업 ³⁾	184	88	96	52.2	136	74	62	-45.6
운수·창고 및 통신업	176	243	-67	-38.1	210	297	-86	-41.0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³⁾	100	81	19	19.0	124	110	14	11.3
교육서비스	66	41	26	39.4	154	109	45	29.2
보건·사회복지	167	94	72	43.1	-	-	-	-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	62	70	-9	-14.5	73	85	-12	-16.4
전 체	151	171	-20	-13.2	183	214	-31	-16.9

註 : 1) 損金限度額 = 기본금액 + 자본금기준금액 + 매출액기준금액.

2) 限度超過率 = (업종별 평균한도초과액 / 업종별 평균접대비) × 100.

資料 : 韓國信用情報, 『財務諸表』, 1994~1995.

1994년의 경우 전체 13개 업종 중 농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업 5개 업종만이 손

금한도액을 초과할 뿐 대부분이 손금한도액보다 적게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이 아닌 각각의 한도초과액을 보더라도 1994년의 분석대상 6,630개 법인 중 31%인 2,071개 법인만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손금한도액을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법인이 전체의 70% 정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손금한도액 규모가 실제 지출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過多한 接待費 損金認定限度는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을 유인하거나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유발하도록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업종별 평균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출액 또는 자본금 규모가 작은 법인은 손금한도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률적인 감소보다는 손금한도가 효율적으로 설정되도록 산출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1996년 세법개정시 매출액 단계별로 차등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매출액 1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0.3%, 100억~500억원은 0.2%, 500억원 초과분은 0.1%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매출액이 큰 법인의 손금한도액이 감소되었으며, 개정 전에 비해 접대비 지출실태에 부합하는 손금한도액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表 II-6〉은 접대비 한도초과율 각 단계별 기업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법인 중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31.2%, 30.6%에 해당하는 법인이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법인 중에는 0~50%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이 각각 79%, 75%이고 50~100%에 해당하는 기업이 21%, 2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법인 중 68.8%, 69.4%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있어 상당수의 법인이 손금한도액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매출액 상위 30위에 속하는 기업은 대부분 접대비 지출액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각 연도에 17개, 20개 법인이 한도액의 50%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에서는 外監法人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기업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경

〈表 II-6〉 接待費 限度超過率別 企業數

(單位: 個, %)

접대비 한도초과율	1994				1995			
	전 체 기 업		30 대 기 업		전 체 기 업		30 대 기 업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90 ~ 100	5	0.1	—	—	17	0.3	—	—
80 ~ 90	35	0.5	—	—	46	0.7	—	—
70 ~ 80	77	1.2	—	—	91	1.5	—	—
60 ~ 70	149	2.2	—	—	141	2.3	—	—
50 ~ 60	178	2.7	—	—	177	2.8	—	—
40 ~ 50	262	4.0	1	3.3	227	3.6	—	—
30 ~ 40	304	4.6	—	—	297	4.7	—	—
20 ~ 30	327	4.9	—	—	294	4.7	—	—
10 ~ 20	348	5.2	—	—	310	4.9	1	3.3
0 ~ 10	386	5.8	1	3.3	319	5.1	—	—
-50 ~ 0	1,664	25.1	11	36.7	1,470	23.5	9	30.0
-50 미만	2,895	43.7	17	56.7	2,874	45.9	20	66.7
계	6,630	100.0	30	100.0	6,263	100.0	30	100.0

資料: 韓國信用情報, 『財務諸表』, 1994~1995.

영분석』의 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과 접대비를 분석한 것이 〈表 II-7〉에 나타나 있다. 지난 4년간 매출액 평균증가율의 경우 16.55%, 접대비 증가율은 17.22%로 접대비의 평균증가율이 매출액의 평균증가율을 앞서고 있어 과도한 접대비 지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4년과 1995년의 접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손금한도액 이하의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적으로는 성격이 불분명한 接待性 經費가 福利厚生費, 販賣促進費, 會議費 등 접대비 이외의 항목으로 손금한도액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접대비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실제 한도초과율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의

〈表 II-7〉賣出額 및 接待費 增加率 推移

(單位: 10億원, %)

	매출액		접대비 ¹⁾	
		증가율		증가율
1991	345,862	—	863	—
1992	385,987	11.60	944	9.39
1993	450,850	16.80	1,136	20.34
1994	531,722	17.94	1,367	20.33
1995	637,275	19.85	1,624	18.80
평균	—	16.55	—	17.22

註: 1)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 기밀비만 포함함.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일부는 실질적으로 접대비 성격의 지출에 사용된다고 보고 이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접대비로 간주하여 접대비 비율을 다시 분석해 본다.

〈表 II-8〉은 동일한 분석대상에 대하여 1994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各事例別로 關聯比率를 구한 것이다. 사례1은 접대비에 접대비 유사경비라고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의 10%를 합한 금액을 접대비로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례2는 20%, 사례3은 30%, 사례4는 40%, 사례5는 50%를 가산한 예이다. 접대비 유사경비를 가산하지 않았을 때는 〈表 II-5〉에 나타난 바와 같이 限度超過率이 -13.2%로 전체 기업의 평균 접대비 지출액은 손금한도액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접대비 유사경비의 10%만 가산하여도 손금한도액을 훨씬 초과하며 20%를 가산한 사례2의 경우는 접대비 지출액의 50% 정도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 기타경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임의로 설정한 5가지 사례 중 어느 것이 실제의

〈表 Ⅱ-8〉 接待性 經費¹⁾의 支出 現況

(單位: 百萬元, %)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접 대 비	245	338	432	525	619
접 대 비 비 율	1.92	2.20	2.49	2.77	3.06
한 도 초 과 액	74	167	261	354	448
한 도 초 과 율	30.2	49.4	60.4	67.4	72.4

註: 1) 접대비와 기밀비에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임.

지출행태와 유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表 Ⅱ-9〉는 위에서 설명한 방식에 의해 接待費의 損金限度 超過率을 業種別로 산출한 것이다. 접대비 유사경비의 10%를 접대비에 가산한 사례1의 경우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손금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다. 〈表 Ⅱ-5〉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손금한도에 미달한 경우와 비교할 때 접대성 경비의 금액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도초과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다. 接待費란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게 접대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접대 행위는 기업간에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요소가 미미한 정부투자기관들의 접대비 지출은 어떠한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일반기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995년말 현재 19개 政府投資機關³⁾ 중 금융업에 해당하는 3개 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을

3) 재정경제원, 『1995년도 정부투자기관 결산서』의 재무자료에 의한.

〈表 II -9〉業種別 接待性 經費의 損金限度超過率

(單位: %)

업 종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농 업	28.7	39.1	46.8	52.8	57.5
어 업	22.7	45.4	57.8	65.7	71.0
광 업	27.0	46.8	58.1	65.5	70.6
제 조 업	38.1	55.7	65.5	71.8	76.1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21.6	53.7	67.2	74.6	79.2
건 설 업	12.7	33.5	46.4	55.0	61.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2.6	13.2	29.5	40.6	48.6
숙 박 및 음 식 점 업	63.7	70.7	75.5	78.9	81.5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23.8	47.3	59.7	67.4	72.6
부동산 · 임대 · 사업서비스업	49.4	63.2	71.0	76.1	79.7
교 육 서 비 스	49.8	57.5	63.1	67.4	70.8
보 건 · 사 회 복 지	68.8	78.5	83.6	86.7	88.9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	34.7	54.3	64.8	71.4	75.9

기준으로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로 분류하여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형성하는 일반기업과 비교한다. 그룹1은 매출액 상위그룹으로서 1개의 정부투자기관과 일반기업 중 매출액 5조원 초과 17조원 이하인 13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은 10조원 정도이며 일반기업의 평균매출액이 10조원이 되도록 비교대상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나머지 그룹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룹2는 중상위그룹으로 6개의 정부투자기관과 매출액 1조원 초과 6조원 이하인 58개 기업이 해당되며 이 그룹의 평균 매출액은 2조 1천억원 정도이다. 그룹3은 중하위그룹으로 6개의 정부투자기관과 매출액 1천억원 초과 7천억원 이하인 555개의 기업이 해당되며 평균매출액은 2,380억원이고 그룹4는 하위그룹으로서 1개의 정부투자기관과 매출액 290억원 초과 310억원 이하인 119개 기업이 해당되며 평균매출액은 300억원이다.

〈表 II -10〉은 그룹별 접대비 지출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정부투자기관의 접대비는 일반기업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기는 하나 비경쟁

〈表 II - 10〉 政府投資機關과 一般企業의 接待費支出 比較

(單位 : 億원, %)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정부 투자 기관	일반 기업	정부 투자 기관	일반 기업	정부 투자 기관	일반 기업	정부 투자 기관	일반 기업
매 출 액	100,146	94,429	21,610	21,182	2,375	2,379	316	300
접 대 비	35	49	10	22	4	6	1	2
접 대 비 비 율	0.03	0.06	0.05	0.12	0.20	0.27	0.42	0.54
손 금 한 도 액	2,678	150	555	33	67	5	29	2
한 도 초 과 액	-2,643	-100	-545.8	-11	-63.3	1	-28	-0.008
한 도 초 과 율	-7,551.4	-204.1	-5,457.9	-50.0	-1,582.5	16.7	-2,800.0	-0.4

資料 : 財政經濟院, 『1995년도 정부투자기관 결산서』.

韓國信用情報, 『財務諸表』.

적인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접대비 자체가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한도초과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모든 그룹에 있어서 接待費 支出額이 損金限度額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접대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損金限度額이 상당히 큰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룹4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접대비는 1억 원이고 일반기업의 접대비는 2억원이었다. 그러나 손금한도액은 정부투자기관이 29억원, 일반기업이 2억원이다. 이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비슷한 규모의 일반기업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매출액이 비슷한 그룹간에 손금한도액이 크게 차이는 나는 것은 자기자본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自己資本比率이 높은 정부투자기관의 손금한도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정부투자기관이 41.0%이고 일반기업은 17.7%이다. 따라서 일반기업과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구조상 또는 재무구조상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接待行爲의 經濟的 效果

1. 理論的 分析

接待行爲로 인하여 발생하는 經濟的 效果는 개인기업이 수행한 접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당해기업의 便益(private benefits)과 費用(private costs)을 구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접대행위로부터 당해기업 이외의 기업 또는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면, 접대행위로부터 발생하는 社會的 便益(social benefits) 또는 社會的 費用(social costs)도 함께 고려해야만 진정한 경제적 효과를 구할 수 있다.

먼저 접대행위를 수행하는 당해기업의 私的(private)費用과 便益에 대하여 논의한다. 접대행위의 사적비용은 접대에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이므로 접대행위는 생산행위와는 달리 限界費用이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접대행위는 경쟁이 존재하는 산업에서 이루어지므로 한 기업의 접대행위 증가는 다른 기업들의 접대행위 증가 또는 접대행위의 高級化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 기업이 접대행위 한 단위를 증가할 때마다 그 추가적 접대행위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하게 되므로 접대행위의 限界私的費用(marginal private costs)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접대행위의 私的便益(private benefits)은 접대행위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큰 차이가 날 것이며, 추가적인 접대행위로부터의 사적편익은 다른 경제행위와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접대행위의 限界私的便益(marginal private benefits)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대행위의 社會的 效果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즉 접대행위가 負(-)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갖고 있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접대행위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은 접대의 형태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지며, 접대의 형태는 크게 기업간의 접대와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접대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간의 접대는 납품중소업체의 대기업에 대한 접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납품경쟁업체들 중에서 제품의 질이 1위이고 접대를 하지 않는 A기업과 제품의 질은 2~3위이나 접대를 충분히 하는 B기업과의 경쟁에서 B기업이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경우 낮은 품질로부터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만큼의 피해가 기업간 접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접대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에 대한 기업의 접대는 주로 각종 認·許可와 연관이 되는데 건축허가의 경우 그 결과가 건물의 파손·붕괴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시킨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규모가 정부에 대한 기업의 접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社會的 費用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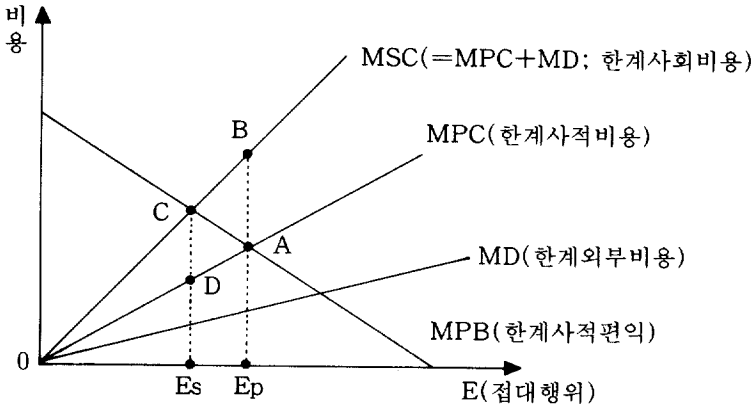
접대행위가 야기하는 또 다른 현상은 奢侈性·享樂産業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치성·향락산업의 비정상적인 팽창은 과소비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생산적 산업에서 소비성 산업으로의 인력이동, 청소년 문제, 사회전반의 도덕성 저하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사치성·향락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금전적 비용이 접대행위가 유발하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접대행위는 접대행위를 수행한 당해기업에게 제공되는 私的便益에 비하여 접대행위로부터 유발되는 總費用(사적비용 + 사회적 비용)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負(-)의 외부효과를 內在化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圖 Ⅲ-1]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圖 Ⅲ-1] 接待行爲의 經濟的 效果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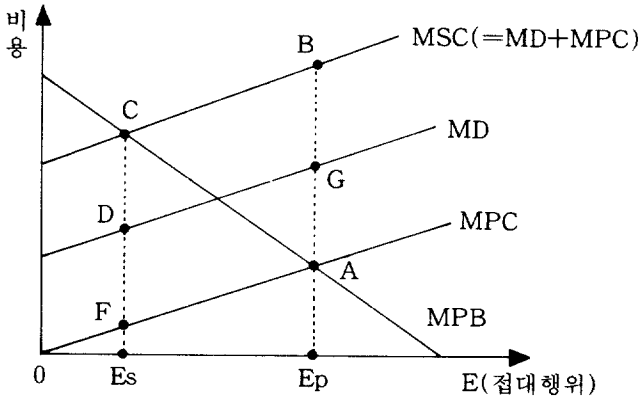


利潤極大化를 추구하는 기업에게는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最適經濟行爲가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最適接待行爲의 수준도 限界私的費用(MPC)과 限界私的便益(MPB)이 같아지는 E_p 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접대행위가 유발하는 負(-)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며(MD), 이를 고려했을 때 접대행위의 총비용은 한계사회비용(MSC)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최적의 접대수준은 MSC와 MPB가 교차하는 E_s 에서 발생하게 된다. 접대수준이 E_p 에서 E_s 로 축소되었을 때 접대행위를 수행한 당해기업이 받는 손실은 ACD에 해당하며, 사회전체가 받는 편익은 BCDA에 해당하여 사회전체가 받는 순편익은 BCA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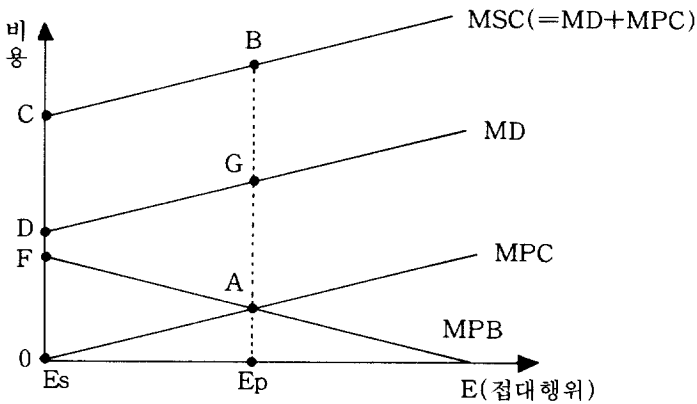
사회적으로 최적의 접대수준(E_s)은 접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한계의 부비용(MD)의 형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다음의 두 경우는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圖 Ⅲ-2] 接待行爲의 經濟的 效果 Ⅱ (接待水準의 縮小)



[圖 Ⅲ-3] 接待行爲의 經濟的 效果 Ⅲ ($E_s=0$)



[圖 Ⅲ-2]는 MD 가 MPC 보다 큰 경우로서 E_s 가 [圖 Ⅲ-1]에서 보다 크게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E_p 가 E_s 로 축소됨에 따라 당해기업의 손실은 ACF 에 이르며, 사회비용의 감소가 $BCFA$ 에 해당

되어 사회전체의 순편익은 BCA에 이른다.

[圖 Ⅲ-3]은 [圖 Ⅲ-2]에서와 같이 MD가 MPC보다 큰 경우이나 MD가 매우 커서 MPB를 항상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MSC와 MPB와의 교차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E_s = 0$ 이 된다. 즉, 사회적으로 최적의 접대수준은 접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_p 가 $E_s = 0$ 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기업의 손실은 AFO이고, 사회비용의 감소는 BCOA에 이르러 사회전체의 순편익은 BCFA에 이른다.

[圖 Ⅲ-1]~[圖 Ⅲ-3]은 접대행위가 유발하는 負(-)의 외부효과와 그 크기 및 특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최적인 접대수준이 변화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외부효과와 그 크기 및 특성은 접대행위가 수행되는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크게 차별화될 것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先進國의 경우 접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외부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고,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가 미비한 非先進國의 경우 그 외부효과는 매우 클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접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負(-)의 외부효과가 매우 크므로 외부효과(MD)의 크기가 최소한 한계사적비용(MPC)의 크기를 초과하는 [圖 Ⅲ-2] 또는 [圖 Ⅲ-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접대비와 관련된 조세정책의 방향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2. 實證的 分析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접대비 지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표본 중 당기순이익이 0인 1개 기업을 제외한 6,262개 기업을 대상으로 實證分析을 시도한다. 실증분석은 접대비지출과 관련 주요변수간의 相關關係를 분석하는 데 그 초점을 둔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1995년말 기준으로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부감사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구성내역은 <表 Ⅲ-1>에 나타나 있다.

〈表 Ⅲ-1〉 實證分析 標本의 構成 (1995)

(單位: 個, %)

법 인 형 태	표 본 수	구 성 비 율
상 장 법 인	617	9.9
등 록 법 인	2,017	32.2
외 부 감 사 법 인	3,628	57.9
계	6,262	100.0

기업의 규모와 각 산업의 특성이 기업의 접대비지출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회귀분석의 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분석방법은 單純最小自乘法(OLS)을 따른다.

$$E = \beta_0 \cdot S + \beta_1 \cdot D_1 + \cdots + \beta_{12} \cdot D_{12} + \epsilon$$

여기서 E는 접대비지출액을 나타내며 S는 매출액으로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로 활용된다. $D_1 \sim D_{12}$ 는 각 산업을 나타내는 더미(dummy) 변수로 사용된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表 Ⅲ-2〉와 같으며 괄호안의 수치는 t값을 나타낸다.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과 접대비지출간에는 正(+)의 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접대비지출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각 산업의 특성과 접대비지출간에는 모두 正(+)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산업들을 비교하면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사업, 도소매업의 순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접대비지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回歸分析은 전체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과 비소비성서비스업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특성과 접대비지출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回歸分析模型은 다음과 같으며 분석방법은 전과 동일하다.

〈表 Ⅲ-2〉 接待費와 産業間의 關係(回歸分析 結果)

변수	계수
매출액	0.000606 (72.538) *
농업	127,958 (1.736)
어업	100,453 (1.517)
광업	85,113 (1.691)
제조업	147,989 (26.599) *
전기·가스·수도업	30,589 (0.520)
건설업	121,681 (11.228) *
도소매업	107,192 (7.406) *
숙박·음식점업	123,255 (4.064) *
운수·창고·통신업	142,250 (6.383) *
부동산·임대사업	109,562 (6.078) *
교육서비스업	146,304 (0.433)
기타공공사회	64,015 (2.501)
	R ² =0.53

註：*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 = \beta_0 + \beta_1 \cdot S + \beta_2 \cdot D + \varepsilon$$

여기서 D는 소비성서비스업⁴⁾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 = 138830 + 0.000604 \cdot S - 83775D$$

(72.59) (-4.60)

$$R^2 = 0.46$$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賣出額(S)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접대비지출과 正(+)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성서비스업의 특성과 접대비지출간에는 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統計的으로도 有意하

4) 소비성서비스업에는 오락서비스업, 음식점·숙박업, 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업, 관광유람선업, 목욕장업 및 안마업 등이 포함된다.

다. 즉, 소비성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이 비소비성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보다 접대비지출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성서비스업의 확산을 억제하고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의 손금인정 한도를 축소한 정책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규모 및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접대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번에는 반대로 접대비지출이 기업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기업의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변수로 賣出額(S)과 當期純利益(P)을 사용하며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변수와 기업규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대한 대리변수로 총자산(A)을 사용한다.

最小自乘法(OLS)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S = -31298872 + 374.59E + 0.49A$$

(34.69) (56.82)

$$R^2 = 0.64$$

$$P = -1774340 - 3.57E + 0.046A$$

(-3.35) (53.39)

$$R^2 = 0.41$$

회귀분석의 결과는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과 총자산간에 正(+)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경영실적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賣出額과 接待費支出 간에는 正(+)의 관계가 있으나 當期純利益과 接待費支出 간에는 負(-)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접대비지출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은 증가하는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접대비지출은 많으면서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IV. 接待費 關聯稅制

1. 接待費의 範圍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接待費·交際費·機密費·謝禮金·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한다(法人稅法 第18條의 2 第3項).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개인에게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任員 또는 使用人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와는 성격이 구분된다고 하겠다.

접대비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損金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그 지출의 성격상 주주의 개인적인 交際에 사용되거나 이익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비용의 낭비를 억제시키고 자본축적을 위해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접대비로 간주한다.

- ① 법인이 종업원단체, 즉 법인체인 사우회·공제회·소비조합·신용협동조합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본다.
- ② 거래처와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매출할인 및 매출장려금, 또는 事前約定利率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접대비로 본다.
- ③ 금융기관 등이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한도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각 금융

기관의 손금인정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金融機關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로서 계약액의 0.1%
- 相互信用金庫의 경우 契金 및 賦金의 모집권유비로서 계약액의 0.1%
- 損害保險會社의 경우 손해보험의 모집비로서 수입보험료의 2%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委託會社의 경우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로서 매출액의 0.1%
-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할인어음의 매출권유비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잔액의 0.1%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갖추고 지출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영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機密費制度를 두고 있다. 機密費란 접대비의 일종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나 지출증빙을 갖추 수 없고 지출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일반접대비에 합산하는 것이다.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 등의 결의로써 그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어야 한다.

2. 接待費 등의 損金算入制度

기업회계에서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접대비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접대행위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손금한도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대비 지출액마저 損金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접대비의 손금인정 범위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성 지출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각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 특성 또는 사회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접대비 손금한도를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동안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는 축소 또는 확대를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면서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손금인정 범위가 결정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企業競爭力을 提高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행 세법에 의한 접대비 손금한도액은 기본금액 2,400만원, 자기자본의 1%(중소기업 2%)와 매출액 단계별 적용비율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매출액이 커질수록 한도액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100억원 이하분은 0.3%, 500억원 이하분은 0.2%, 500억원 초과분은 0.1%를 적용하여 매출액이 커질수록 한도액 증가율은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의 변화 내역을 개정연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1979年 : 接待費 損金限度의 縮小

1979년 세법 개정 이전까지는 기초금액 100만원에 자본금(50억원을 한도로 함)의 2%와 수입금액의 0.4%의 합계액을 손금산입 한도로 하였으나 기업의 과다한 소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를 축소하였다. 기초금액을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2%로 적용비율이 낮아졌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수입금액의 비중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오히려 한도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축소되었다.

$$\begin{aligned} \text{손금한도액} &= 300\text{만원}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times 2\% \\ &+ \text{수입금액의 } 0.2\% \end{aligned}$$

세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규모별 한도액 규모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매출액을 자본금의 7배로 가정하여 개정 전·후의 한도액을 산출한 것이 <表 IV-1>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규모가 5천만원인 기업은 개정 전의 한도액에서 개정 후의 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38.2%로 오히려 한도가 38% 증가하였으나 자본금 규모가 5억원인 기업의 경우는 20%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감소폭은 크게 나타난다.

<表 IV-1> 接待費 損金認定 限度額 比較

(單位：千원, %)

자본금	개정전	개정후	비율 ¹⁾
50,000	3,400	4,700	138.2
500,000	25,000	20,000	80.0
2,000,000	97,000	71,000	73.2
5,000,000	241,000	173,000	71.8
8,000,000	325,000	215,000	66.2
10,000,000	381,000	243,000	63.8
15,000,000	521,000	313,000	60.1
20,000,000	661,000	383,000	58.0

註：1. 수입금액은 자본금의 7배로 가정하였음.

1) 비율 = (개정 후 손금한도액 / 개정 전 손금한도액) × 100.

나. 1981年：接待費 및 機密費 損金限度 調整

현행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접대비의 한도금액은 자본금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실제 접대비 지출 실태와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자본금 규모나 수입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은 손금인정 한도액이 상당히 큰 규모이므로 접대비 명목의 소비성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오히려 접대비 지출비중이 큰 데도 불구하고 한도액이 적어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⁵⁾. 따라서 대기업은 접대비의 손금 인정 한도를 축소하여 과다한 접대비 한도를 이용한 비용의 변칙적인 처리를 규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그 한도를 확대하여 접대비 과소인정으로 인한 기업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하였다.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자본금 기준금액은 종전과 같이 2%로 하였다. 수입금액기준은 0.2%에서 0.1%로 축소하였으나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종전과 같이 0.2%를 적용함으로써 접대비 지출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도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시행령 제43조).

$$\begin{aligned}\text{손금한도액} &= 600\text{만원}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times 2\% \\ &+ \text{수입금액} \times 0.1\% (\text{중소기업은 } 0.2\%) \end{aligned}$$

또한 기밀비의 손금인정 한도액이 자본금(50억원)의 1%와 수입금액의 0.1%의 합계액이었으나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기밀비의 한도액도 자본금(50억원 한도)의 1%와 수입금액의 0.05%로 축소되었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begin{aligned}\text{기밀비 손금한도액}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times 1\% + \text{수입금액} \\ &\times 0.05\% \end{aligned}$$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 의결 의로써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는 위의 한도 내에서는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을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여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접대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기밀비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5) <表 II-3>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접대비 지출비율이 크게 나타남.

금액이라도 그 지급된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을 당해 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아 접대비의 한도 내에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출사업이나 해외건설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해외접대비는 접대비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외화수입금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다. 1985年 : 海外接待費에 대한 間接規制 強化

해외접대비는 한도액 제한없이 전액 손금인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접대비 한도액(600만원+자본금의 2%+수입금액의 0.1%) 계산시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의 50%(또는 해외접대비 $\times$ 1,000 $\times$ 50%) 상당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방법에 의하여 해외접대비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규제하여 왔다. 1985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동법 제26조의 해외사업 포함)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60%(또는 해외접대비 $\times$ 1,000 $\times$ 60%)를 국내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만큼 국내접대비 한도액이 축소되었으며 이는 해외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18조의 2).

라. 1990年 : 消費性서비스業 不動產業 등의 接待費 損金限度 縮小

소비성서비스업의 확산을 억제하고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의 손금인정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접대

의 필요성이 적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도 축소하였다.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05%를 적용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0.1%를 적용하였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를 기초금액 600만원, 자본금의 2%, 매출액의 0.05%의 합계액으로 축소하였는데 소비성 서비스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매출액에 대하여만 손금인정 한도액이 축소되었다.

$$\text{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한도} = \frac{600\text{만원}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times 2\% + \text{수입금액} \times 0.05\%}{\text{수입금액}}$$

소비성서비스업이란 ① 오락서비스업 ② 음식점업·숙박업 ③ 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업 ④ 관광유람선업 ⑤ 목욕장업 및 안마업과 같은 업종을 말한다.

부동산업(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이란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단, 주택신축매매업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법인을 제외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⁶⁾(특약판매자는 제외)와의 거래를 말한다.

6) 特殊關係 있는 者란 ① 출원자와 그 친족 ②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③ 출자자 또는 ①, ②의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④ ③ 또는 ⑥의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수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⑤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접대비 중 지출증빙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밀비의 손금한도액을 일반기업에 한해 자본금의 1%와 매출액의 0.035%(중소기업은 0.05%)로 조정함으로써 종전의 약 70% 수준으로 축소하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begin{aligned} \text{기밀비 손금한도액} &= \text{자본금(50억원)} \times 1\% + \text{수입금액} \\ &\quad \times 0.035\% (\text{중소기업 } 0.05\%) \end{aligned}$$

마. 1992年 : 消費性서비스業의 範圍 調整

관광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관광호텔업과 일반여행업 등에 대해서는 세계상의 각종 규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일반여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6항 제7항).

바. 1993年 : 接待費 損金限度 및 消費性서비스業의 範圍 調整

1981년의 세법개정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접대비지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손금한도액 산출시 대기업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은 손금한도가 적어서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에 한해 기초금액을 1,8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매출액의 적용비율도 중소기업 0.3%, 일반기업 0.15%로 조정하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시행령 제43조).

개인 ⑥ ①또는 ②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text{중소기업의 손금산입 한도} = 1,800\text{만원}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 \times 2\% + \text{매출액} \times 0.3\%$$

$$\text{일반기업의 손금산입 한도} = 600\text{만원}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 \times 2\% + \text{매출액} \times 0.15\%$$

19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관련사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고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대상에 육설 등을 부설한 미용실업을 추가하였다(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된 관광관련사업으로는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⁷⁾ ②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전문 및 종합휴양업 ③ 체육관운영업 중 체육도장업 ④ 여행알선업, 전세버스운송업, 관광유람선업 ⑤ 목욕장업 중 일반목욕장업이 있다.

사. 1995년 : 賣出額 規模別 適用比率 差等化

그동안 기업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이 고비용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지출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하향조정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경영 여건상 접대비 손금한도액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한도액이 증가되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하여는 오히려 축소되도록 조정하였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액에 단일비율(일반기업 0.15%, 중소기업 0.3%)을 적용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늘어나면 접대비 손금한도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매출액이 큰 대기업에는 한도액이 상당히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비율을 차등화하여 수입금액이 늘어날수록 손금한도증가율이 遞減되도

7)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해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록 개선하였다. 일반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기초금액 2,400만원에 자기자본⁸⁾(50억원 한도)의 2%와 수입금액의 0.1~0.3%(100억원 이하분 0.3%,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분 0.2%, 1,000억원 초과분 0.1%)의 합계액을 손금산입 한도로 하였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전액 손금인정하던 해외접대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대외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일반접대비에 통합하였다. 따라서 매출액기준 계산시 외화수입금액의 60%(중소기업 50%)를 매출액에서 제외하던 규정도 폐지되었다.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특수관계자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0.05%(중소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0.1%)를 적용하여 변화가 없었다.

아. 1996年 : 接待費 損金限度 調整

기업의 건전한 접대관행 정착과 소비절약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조정하였다. 기본금액은 2,400만원을 유지하되 일반기업에 한해 자기자본 적용비율을 1%로 축소하였고 매출액에 0.1%를 적용하던 구간이 1,00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기준금액이 낮아졌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인 기업은 개정으로 인한 손금한도액에 변화가 없으나 일반기업이면서 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한도액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자. 1997年 : 接待費 및 機密費 損金限度 縮小 및 廢止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손금한도를 축소해 나가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업의 消費性 경비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8) 1994년 세법개정으로 자본금 기준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접대 행위를 유도하고 과소비 풍조를 예방하면서 財務構造 改善을 통한 競爭力 강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 하겠다.

기초금액 2,400만원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는 1998년 이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자기자본 기준금액은 1998년 한해 동안 중소기업에 한해 자기자본의 1%를 한도액에 포함하되 1999년 이후부터는 한도액 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 매출액기준은 1998년에는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06%로, 1999년에는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에 대해 0.15%,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04%로 축소한다. 2000년부터는 100억원 이하분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에 대해 0.1%,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03%로 축소함으로써 전 기업의 매출액 기준금액이 크게 감소되었다.

또한 기업경영의 透明性 提高 및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私的 경비를 이용할 소지가 큰 기밀비의 손금인정한도를 축소하였다. 자기자본 기준금액은 1998년부터 제외되고, 현재 접대비 손금한도의 3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1998년에는 접대비 손금한도의 20%, 1999년에는 10%, 2000년에는 0%로 축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기밀비의 손금한도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00년 이후에는 손금산입을 폐지하도록 한다.

민간기업과는 달리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公共法人의 경우 접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하여, 공공법인의 손금한도액을 일반법인의 70%로 축소하였다. 이는 租減法上的 公共法人을 대상으로 하며, 1998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3. 接待費支出明細書制度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이 접대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접대비지출명세서⁹⁾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상의 영업수익을 말하며, 직전사업연도가

12월 미만인 경우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접대비 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거래한 접대비, 기밀비, 해외 접대비 중 외국에서 지출한 접대비, 건당 10만원 이하인 소액접대비는 지출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제도와 관련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84年 : 接待費支出明細書 提出制度 新說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에 의해 거래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3). 이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행위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인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법인이며, 수입금액이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시기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것은 7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것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연 2회 제출하도록 한다. 접대비의 손익귀속시기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1984년 10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개의 사업장, 지점, 공장 등이 있는 경우 납세지소관세무서인 본점 소재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1985年 : 接待費支出明細書 提出對象 擴大 및 提出期限 延長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기준을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낮춤으로써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법인이 확대되었다. 이는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98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였다.

또한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기한을 각각 한달씩 연장하여, 1월부터 6월까지의 발생분은 8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발생분은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1987年 : 提出對象 擴大 및 少額接待費 引上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하여 그 기준금액을 또한번 낮춤으로써 제출대상 법인의 범위가 제도신설 당시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었다(부칙 제 18의 3).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처리량을 축소하여 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접대비를 지출하더라도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을 건당 5만원 이하에서 건당 10만원 이하로 인상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을 제출대상에 포함시키되 소액접대비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신용카드 使用義務制度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수취분 포함)의 실제 사용비율이 기준사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비율에 해당 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

비가 600만원 이하인 법인은 제외된다.

기준사용비율은 납세지 또는 사용지역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지역은 75%, 광역시지역은 60%, 시지역은 50%, 군지역은 40%이다. 실제사용비율 및 손금불산입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text{실제사용비율} = \frac{\text{신용카드 사용금액}}{\text{손금산입 한도 내 접대비 지출액}}$$

$$\begin{aligned} \text{손금불산입액} = & \text{접대비(기밀비 포함)지출액} \times (\text{기준사용비율} \\ & - \text{실제사용비율}) \end{aligned}$$

접대비지출액의 대부분을 기밀비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가능금액을 전액 신용카드로 사용하더라도 기준비율에 미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사용비율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다음의 비율이 기준사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비율로 한다.

$$\text{기준사용비율} = \frac{(\text{접대비지출액} - \text{기밀비지출액})}{\text{접대비지출액}} \times 100$$

신용카드 사용의무제도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90年 : 信用卡 使用未達 接待費 損金否認

신용사회의 정착과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접대비 중 미달비율만큼 손금부인하도록 하였는바, 신용카드 사용 미달시 손금부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신용카드사용비율 미달로} & \quad \text{접대비지출액} \times (\text{기준사용비율} \\ \text{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 & \quad - \text{신용카드사용비율}) \end{aligned}$$

위 산식에서 접대비지출액이란 접대비지출액(기밀비와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 등의 한도초과액을 포함한다) 중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손금인정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사용비율이란 접대비지출액에서 신용카드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신용카드사용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사용비율은 일반기업 40%, 중소기업 30%이나 1991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준사용비율은 일반기업 35%, 중소기업 25%가 적용되었다.

나. 1993年 : 接待費 信用卡 使用義務比率의 上向調整

유흥업소 등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고 신용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대비 지출의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일반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보급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재기업¹⁰⁾은 중소기업과 같이 30%를 적용받도록 하였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 시행령 제43조). 그러나 접대비지출이 많지 않은 영세법인, 즉 연간 접대비 지출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1994年 : 接待費 信用卡使用額에 税金計算書 去來分도 包含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양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10) 조감법시행령 제38조의 대도시권(조감법시행령 [별표1]의 대도시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계산시 세금계산서 거래분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하였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라. 1995年 : 接待費 信用卡 使用義務比率의 地域別 差等化

그동안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이용 확대를 통해 유흥업소의 과세 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왔다. 1995년의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이 다시 확대되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역별 분포실태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의무비율을 차등화하였다.

일반기업은 50%,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은 30%이던 의무비율을 일반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지역별로 차등화하였다. 또한 법인의 납세지 또는 접대비 사용지역 중 법인이 선택한 기준에 의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 納稅地 基準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납세지(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소재기업은 75% 이상, 광역시 소재기업은 60% 이상, 시지역 소재기업은 50% 이상, 군지역 소재기업은 40% 이상이고 사업연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 전·후의 소재지역의 비율 중 작은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한하여 50%를 적용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농통합시의 읍·면지역과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은 군지역 소재기업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 接待費 使用地域 基準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을 사용지역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비율을 적용하여 미달지역분만 손금부인하도록 하였는바, 각각의 사용지역별로 적용할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은 서울시지역분은 75% 이상, 광역시지역분은 60% 이상, 시지역분은 50% 이상, 군지역분은 40% 이상, 외국에서의 사용분은 당해법인의 본점소재지 지역의 비율(40~75%)을 적용한다. 각 사용지역별 접대비 손금산입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각 사용지역별 접대비손금산입액 =

$$\text{접대비 손금산입액(전체)} \times \frac{\text{사용지역별 접대비지출총액}}{\text{접대비지출총액}}$$

이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에 사용지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동 기밀비를 안분하여 각 사용지역별 접대비 손금산입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기밀비를 각 사용지역별로 안분하는 방법은 당해법인의 접대비지출총액(동 기밀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각 사용지역별 접대비지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마. 1996年 : 신용카드의 範圍 擴大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제한하던 것을 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바. 1997年 : 신용카드 使用義務比率 上向調整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최근 신용카드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

중에 신용카드가맹점 공동관리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시 80%, 광역시 70%, 시지역 60%, 군지역 50%로 상향조정하였다.

5. 最近 稅法改正의 效果

〈表 IV-2〉는 1992년부터 1997년 세법개정까지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정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表 IV-2〉 接待費 損金限度의 變更 推移

적용 연도	기본금액	자본금 기준비율 ¹⁾	매출액 기준비율 ²⁾	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	해외 접대비
1992 ~ 1993	일반기업: 600만원 중소기업: 1,200만원	2%	일반기업:0.1% 중소기업:0.2%	일반기업:40% 중소기업 및 지방 소재기업:30%	전액 손금인정 ³⁾
1994 ~ 1995	일반기업: 6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2%	일반기업:0.15% 중소기업:0.3%	일반기업:50% 중소기업 및 지방 소재기업:30%	전액 손금인정
1996	2,400만원	2%	100억원 이하:0.3% 100~1,000억원:0.2% 1,000억원 초과:0.1%	특별시지역:75% 광역시지역:60% 시지역:50% 군지역:40%	일반접대비 로 통합
1997	2,400만원	일반기업:1% 중소기업:2%	100억원 이하:0.3% 100~500억원:0.2% 500억원 초과:0.1%	상동	상동
1998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일반기업:0% 중소기업:1%	100억원 이하:0.3% 100~500억원:0.2% 500억원 초과:0.06%	특별시지역:80% 광역시지역:70% 시지역:60% 군지역:50%	상동

〈表 IV-2〉의 繼續

적용 연도	기본금액	자본금 기준비율 ¹⁾	매출액 기준비율 ²⁾	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	해외 접대비
1999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0%	100억원 이하:0.3% 100~500억원:0.15% 500억원 초과:0.04%	상동	상동
2000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0%	100억원 이하:0.2% 100~500억원:0.1% 500억원 초과:0.03%	상동	상동

註: 1) 1994년까지는 자본금, 1995년부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資本金 및 自己資本 모두 50억원을 한도로 함.

2)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은 매출액의 0.05%임.

3) 매출액기준 계산시 외화수입금액의 60%(중소기업 50%)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나 1995년 세법개정시 이 규정을 폐지하였음.

資料: 財政經濟院, 『간추린 改正稅法』, 各 年度.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 세법개정시 처음으로 賣出額規模別 差等比率을 적용함으로써 손금산입 한도의 산출방식이 기본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다시 수정한 1996년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實質限度額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법개정에 따른 손금한도액 축소 효과를 각 매출액 단계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95년 개정과 1996년의 개정에 따른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이라는 가정하에 매출액 100억원의 경우는 자본금 35억원¹¹⁾, 그 외는 자본금이 모두 50억원을 초과한다고 보고, 한도액기준인 50억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금한도액을 나타낸 것이 〈表 IV-3〉이다.

11) 자기자본기준 설정을 위하여 상장기업(한국신용정보 자료)의 매출액규모별 자기자본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평균 자기자본은 34억 4천만원이었음.

〈表 IV-3〉 稅法改正에 따른 損金限度額 縮小效果(1995~1997)

(單位: 億圓, %)

매출액	1995년 손금 한도액	1996년			1997년			
		손금 한도액	전년 대비 증감액	전년 대비 변동률	손금 한도액	전년 대비 증감액	전년 대비 변동률	1995년 대비 변동률
100	0.91	1.24	0.33	36.26	0.89	-0.35	-28.23	-2.20
200	1.36	1.74	0.38	27.94	1.24	-0.50	-28.74	-8.82
300	1.51	1.94	0.43	28.48	1.44	-0.50	-25.77	-4.64
400	1.66	2.14	0.48	28.92	1.64	-0.50	-23.36	-1.20
500	1.81	2.34	0.53	29.28	1.84	-0.50	-21.37	1.66
600	1.96	2.54	0.58	29.59	1.94	-0.60	-23.62	-1.02
700	2.11	2.74	0.63	29.86	2.04	-0.70	-25.55	-3.32
800	2.26	2.94	0.68	30.09	2.14	-0.80	-27.21	-5.31
900	2.41	3.14	0.73	30.29	2.24	-0.90	-28.66	-7.05
1,000	2.56	3.34	0.78	30.47	2.34	-1.00	-29.94	-8.59
2,000	4.06	4.34	0.28	6.90	3.34	-1.00	-23.04	-17.73
3,000	5.56	5.34	-0.22	-3.96	4.34	-1.00	-18.73	-21.94
5,000	8.56	7.34	-1.22	-14.25	6.34	-1.00	-13.62	-25.93
7,000	11.56	9.34	-2.22	-19.20	8.34	-1.00	-10.71	-27.85
10,000	16.06	12.34	-3.72	-23.16	11.34	-1.00	-8.10	-29.39
20,000	31.06	22.34	-8.72	-28.07	21.34	-1.00	-4.48	-31.29
100,000	151.06	102.34	-48.72	-32.25	101.34	-1.00	-0.98	-32.91

註: 1. 賣出額 100억원은 自己資本 35억원, 그 외는 한도액인 50억원을 적용하였음.

2. 1997년 손금한도액 산출시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一般企業의 적용비율인 1%를 사용하였음.

1995년 개정에 의해 매출액 규모별 차등비율을 적용한 결과, 1996년의 손금한도액이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 1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는 오히려 30% 정도 증가하였으나, 2,000억원을 초과하면서부터는 매출액 규모에 比例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접대비 손금한도의 축소효과가 커지기는 하나 일부 기업은 손금한도가 확대되어 기업간 불공평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改正에 의해 1997년에는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에 비해 손금한도액이 20% 이상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증가할

수록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어, 1995년 개정시 발생하였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 매출액 500억원까지는 매출액 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도액의 감소분은 자기자본기준이 1%로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대비 변동률은 2차례에 걸친 改正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매출액에 차등비율을 적용하기 이전인 1995년의 손금한도액에 대한 1996년 개정안에 의한 손금한도액의 변동률이다. 매출액 500억원까지는 감소율이 줄어들어 오히려 한도액이 1.66% 증가하였으며, 500억원 초과하면서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 500억원인 경우 자본금기준 금액이 5,000만원 감소하였으나, 기본금액이 1,800만원, 매출액기준 금액이 3,500만원 증가하여 총 한도액은 증가하였다.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율이 증가함으로써, 奢侈性 또는 過多支出 기업에 대해 접대비 규모를 제한하려는 개정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손금한도액의 1995년 대비 변동률을 보면,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손금한도액 감소율이 매출액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4〉에서는 1997년 세법개정으로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될 접대비 손금한도를 〈表 IV-3〉과 같은 매출액 구간별로 산출하였고 그에 따른 1995년도 대비 변동률을 나타냄으로써 1995년 이후 2000년까지의 세법개정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손금한도액의 산출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1998년에는 33~60%, 2000년에는 60~8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1995년 이후 1997년까지의 감소추세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커질수록 감소폭도 커짐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매출액이 커질수록 감소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995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의 결과 2000년도에는 손금한도액이 1995년에 비해 최고 80%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감소폭이 가장 적은 기업은 매출액 500억원 수준의 기업들이라 하겠다.

〈表 IV-4〉 1997年 稅法改正에 따른 損金限度 縮小效果(1998~2000년)

(單位: 億원, %)

매출액	1995년	1998년		1999년		2000년	
	손금한도액	손금한도액	변동률 ¹⁾	손금한도액	변동률 ¹⁾	손금한도액	변동률 ¹⁾
100	0.91	0.42	-53.8	0.42	-53.8	0.32	-65
200	1.36	0.62	-54.4	0.57	-58.1	0.42	-69
300	1.51	0.82	-45.7	0.72	-52.3	0.52	-66
400	1.66	1.02	-38.6	0.87	-47.6	0.62	-63
500	1.81	1.22	-32.6	1.02	-43.6	0.72	-60
600	1.96	1.28	-34.7	1.06	-45.9	0.75	-62
700	2.11	1.34	-36.5	1.1	-47.9	0.78	-63
800	2.26	1.4	-38.1	1.14	-49.6	0.81	-64
900	2.41	1.46	-39.4	1.18	-51.0	0.84	-65
1,000	2.56	1.52	-40.6	1.22	-52.3	0.87	-66
2,000	4.06	2.12	-47.8	1.62	-60.1	1.17	-71
3,000	5.56	2.72	-51.1	2.02	-63.7	1.47	-74
5,000	8.56	3.92	-54.2	2.82	-67.1	2.07	-76
7,000	11.56	5.12	-55.7	3.62	-68.7	2.67	-77
10,000	16.06	6.92	-56.9	4.82	-70.0	3.57	-78
20,000	31.06	12.92	-58.4	8.82	-71.6	6.57	-79
100,000	151.06	60.92	-59.7	40.82	-73.0	30.57	-80

註: 1) 1995년 대비 변동률임.

V. 外國의 接待費 關聯稅制

1. 美國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의 성격상 손금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1987년 이전까지는 접대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1987년부터는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접대비, 영업활동에 부수되어 통상 필요한 접대비일지라도 지출액의 80%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접대비의 費用處理 要件을 강화하였다.

1995년부터 음식과 접대비에 한해서는 證憑書類를 갖추는 경우 실제 비용의 50%까지 손금산입되나 접대를 위한 택시비 등 운임은 전액 손금산입된다. 사업목적으로 제공되는 寄附는 연간 1인당 25달러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된다.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되는(directly-related-to) 接待費란 장래의 수익 등을 얻을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 접대가 행하여지는 동안 사업에 관계된 相談・交渉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접대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納稅者가 참석하지 않은 접대나 나이트클럽, 극장, 스포츠경기장 등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업에 관한 회담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된다고 보지 않는다.

영업활동에 부수된(associated-with) 接待費로는 사업에 관계된 회의나 전시회 전후에 이루어지는 접대의 경우 손금산입 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나이트클럽이나 극장 등에서의 접대도 해당된다.

업무상 필요한 식사접대(business meals)를 손금에 산입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나 납세자의 고용인이 꼭 참석하여야 한다.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되거나 영업활동에 부수된 접대인 경우에만 손금처리 대상이 되

므로 식사 전후에 실질적인 事業的 交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출비용이 과도하거나 사치성 지출인 경우는 손금불산입된다.

接待用 施設(entertainment facility), 즉 요트, 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에 관계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지만 주로 종업원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다. 사교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클럽의 회비(club dues)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미국 내 이외의 지역에 대한 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부인한다. 다만, 당해 여행이 일주일을 초과하지 않고 여행중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시간이 전체 여행시간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납세자의 사업장소에서 제공되는 종업원을 위한 식사 및 음료비, 종업원에 대한 봉급으로 간주되는 종업원을 위한 접대비, 종업원을 위한 연예비용, 종업원회의·주주회의 및 이사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종업원이 아닌 제3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접대비, 법이 허용하는 단체의 회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정상가격을 받고 고객에게 공급되는 접대 및 유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환불비용 등은 接待費 명목의 是否認項目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액, 접대일, 접대장소, 접대목적과 회담 등의 성격, 초대자의 성명·회사명·직책 등을 기록해야 한다.

2. 日本

가. 交際費 課稅制度의 趣旨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교제, 접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본의 상거래 관행상 부득이한 일이다. 따라서 법인이 지출한 교제비에는 본래 사업상 필요경비적인 성격이 있으나, 이러한 비용의 지

출은 자칫하면 지나치게 낭비될 경향이 있어 건전한 상거래의 확립과 불필요한 경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가능한 한 지출을 억제시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제비를 무한정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이로 인해 세액이 감소한 만큼 교제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조세특별조치법」에서는 법인이 지출한 교제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

나. 交際費 등의 意義와 範圍

「租稅特別措置法」에 交際費 등의 課稅特例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교제비 등이란 交際費, 接待費, 機密費 등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매출처, 매입처, 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 대한 接待, 響應, 慰安, 贈賜品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의해 다음의 비용은 위의 교제비에서 제외된다.

- ① 종업원의 위안을 위해 행해지는 운동회, 연예회, 여행 등에 필요한 비용
- ② 달력, 수첩, 부채, 수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증여에 지출되는 비용
- ③ 회의와 관련하여 다과, 도시락 기타 이와 유사한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 ④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이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을 위해 행해지는 좌담회 및 기사수집 및 방송취재에 소요되는 비용

교제비 등에 포함되는 비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회사창립기념일, 사옥신축기념 등의 연회비, 교통비 및 기념품비, 선박건조 및 토목건축의 進水式, 起工式, 落成式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제비에 포함되나 이러한 기념식에서 주로 사내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통상의 음식비 또는 진수식 등의 식전 제사를 취해 통

상 소요되는 비용은 교제비 등에서 제외된다.

- ② 하청공장, 특약점, 대리점 등이 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포함된다. 단, 거래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방 사업자에 대해 금전 또는 사업용자산을 교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외된다.
- ③ 매출처, 매입처 등에 속한 者의 慶弔事에 지출하는 금품 등의 비용
- ④ 매출처, 매입처, 기타사업에 관계있는 자(자기 제품 또는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 포함) 등을 여행 등에 초대하는 비용
- ⑤ 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그 제품 또는 상품의 도매업자에 대해, 도매업자가 소매업자 등을 여행 등에 초대하는 데 지출한 비용
단, 賣出割引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되나 매출할인 등과 동일한 산정기준으로 지출한 것이라도 매출처에 대해 사업용자산 또는 소액물품(매입단가가 대체로 3,000엔 이하인 것) 이외의 물품을 교부하거나 여행 등에 초대하는 비용은 교제비에 포함된다. 단, 매출할인 등이라도 일정액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여행 등에 초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적립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행 등이 행해진 사업연도에 교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본다.
- ⑥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景品交換權附販賣 또는 경품부판매에 의해 매출처에 교부한 경품 중 그 종류 및 금액이 제조업자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소액물품이 아닌 경우 그 비용
- ⑦ 회비, 찬조금, 기부금, 광고료, 강독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비용
- ⑧ 고층건물, 맨션 등의 건설에 따라 주변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관계자를 여행 등에 초대하여 음식 등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⑨ 수퍼마켓이나 백화점 등이 기존의 상가 등에 진출하는 데 있어 주변 상점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영업보상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도 포함)
- ⑩ 매출처, 매입처 등의 종사원에 대해 사례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비용

⑪ 공사입찰시 지출하는 談合金 등

⑫ 매출처, 매입처 등 社外の 者에 대한 접대, 향응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부금, 예누리, 할인,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급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전부

과세대상이 되는 교제비 등은 법인이 직접 지출한 것이든, 동업자단체 등을 통해 간접지출한 것이든 구분없다. 또한 先支給한 교제비나 未支給 교제비 등도 전부 교제·접대 등을 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자산의 취득가격과 이연자산에 포함되어 아직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교제비 등에 대해서도 전부 그 지출연도의 교제비 등에 포함하고 있다.

교제비 과세대상이 되는 교제비 등이란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고,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교제비, 기밀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일지라도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 회사의 업무수행에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교제비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 손금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접대비가 임원 또는 근로자를 통해 지출된 때에는 수취자인 임원 또는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 交際費 등의 損金不算入制度

현행 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지출한 교제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단, 期末資本金이 5,000만엔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기말자본금이 1,000만엔 이하인 법인은 지출액의 90% 상당액으로 年 400만엔을 한도로 하고, 기말자본금이 1,000만엔 초과 5,000만엔 이하인 법인은 지출액의 90% 상당액으로 年 300만엔을 한도로 하고 있다.

交際費의 損金不算入制度는 구분별하고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고, 기업의 자본축적을 꾀하기 위하여 1952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일본은 기초 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내수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교제비가 상당히 낭비되고 있었으며, 수입이 증가하여 國際收支 惡化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손금불산입제도의 도입 당시 대상기업은 자본금 500만엔 이상인 법인 이며, 손금불산입 한도액은 지출교제비에서 去來額基準金額 또는 實績 基準金額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이었다. ‘거래액기준금액’이란 주된 사업의 구분에 따라서 거래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예를 들면, 제조업은 제품매출액의 0.8% 임)이며, ‘실적기준금액’이란 교제비 지출실적의 70% 상당액을 말한다.

1959년도 稅法改正에서는 去來額基準과 實績基準을 廢止하고 당기에 지출한 교제비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의 20%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단순화하였다. 일정금액이란 법인의 자본(資本金, 資本積立金, 再評價積立金 및 利益積立金)의 0.1%에 상당한 금액에 300만엔을 가산한 금액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1977년 稅法改正에서는 총자본의 일정비율을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폐 지하고, 자본금 1,000만엔 이하의 법인에는 年 400만엔, 자본금 1,000만 엔 초과 5,000만엔 이하의 법인에는 年 300만엔, 자본금 5,000만엔 이상 인 법인에는 年 200만엔으로 定額控除方式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交際費의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交際費 實態와 그 支出額이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판도 커짐에 따 라, 1980년에는 원칙적으로 교제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방향으로 전 환하였으나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자본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법인은 年 400만엔까 지, 자본금액이 1,000만엔 초과, 5,000만엔 이하인 법인은 年 300만엔까 지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였다.

1993년 세법개정에서는 자본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법인은 교제비

지출액의 90% 상당액으로 年 400만엔까지, 자본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고 5,000만엔 이하인 법인은 교제비지출액의 90% 상당액으로 年 300만엔까지로 손금한도액이 조정되었다. 기업 규모별 손금산입 한도액은 변화가 없으나 지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출액의 90%까지만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금산입액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 800만엔인 법인이 200만엔의 교제비를 지출한 경우 20만엔($200\text{만엔} \times 10\%$)이 손금불산입되며, 600만엔의 교제비를 지출한 경우는 240만엔($200\text{만엔} + 400\text{만엔} \times 10\%$)이 손금불산입된다. 다음의 <表 V-1>은 일본의 접대비 관련세제의 변화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表 V-1> 日本의 交際費關聯 稅制 沿革

	한도액
1952	-자본금 500만엔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 -손금불산입액 (지출교제비 - (거래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교제비 지출액의 70% 중 큰 금액)) $\times 1/2$
1959	-자본금 500만엔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 -손금불산입액 (교제비지출액 - ((자본 $\times 0.001$) + 300만엔) / 월수) $\times 0.2$
1977	-손금산입 한도액 (정액공제방식) 자본금 1,000만엔 이하 : 연 400만엔 자본금 1,000만엔 ~ 5,000만엔 : 연 300만엔 자본금 5,000만엔 초과 : 연 200만엔
1980	-손금산입 한도액 (정액공제방식) 자본금 1,000만엔 이하 : 연 400만엔 자본금 1,000만엔 ~ 5,000만엔 : 연 300만엔 자본금 5,000만엔 초과 : 전액 손금불산입
1993	-손금산입 한도액 (정액공제방식) 자본금 1,000만엔 이하 : 지출액의 90% 상당액으로 연 400만엔 한도 자본금 1,000만엔 ~ 5,000만엔 : 지출액의 90% 상당액으로 연 300만엔 한도 자본금 5,000만엔 초과 : 전액 손금불산입

〈表 V-2〉는 일본의 1994년 업종별 교제비 지출액과 매출액대비 교제비 지출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表 II-2〉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접대비 비율과 비교하면, 1994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평균이 1.63%이고 일본은 0.38%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1994년의 경우 건설업(0.75%), 부동산업(0.63%) 출판인쇄업(0.63%)이 전체평균인 0.38%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접대비 지출이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表 V-2〉 日本의 業種別 交際費 支出額 및 賣出額對比率
(1991~1994年)

(單位: 億엔, %)

업 종	1991		1992		1993		1994	
	교제비	매출액 대비율	교제비	매출액 대비율	교제비	매출액 대비율	교제비	매출액 대비율
농 립 수 산 업	198	0.38	195	0.37	197	0.44	167	0.36
광 설 업	250	0.49	227	0.55	196	0.60	195	0.55
건 설 업	11,950	0.77	12,265	0.84	12,262	0.81	11,195	0.75
섬 유 공 업	464	0.45	491	0.43	445	0.41	427	0.43
화 학 공 업	4,060	0.52	4,125	0.54	3,991	0.54	3,938	0.53
철 강 금 속 공 업	2,594	0.48	2,656	0.51	2,406	0.50	1,878	0.45
기 계 공 업	4,759	0.30	4,742	0.30	4,279	0.29	3,592	0.24
식 료 품 제 조 업	1,339	0.37	1,474	0.38	1,397	0.37	1,263	0.35
출 판 인 쇄 업	1,301	0.75	1,391	0.83	1,377	0.74	998	0.63
기 타 제 조 업	2,515	0.45	2,715	0.48	2,394	0.46	2,113	0.44
도 매 업	9,871	0.22	10,223	0.24	9,554	0.21	8,595	0.22
소 매 업	4,066	0.33	4,296	0.33	4,228	0.33	3,738	0.29
음 식 숙 박 업	1,174	0.55	1,218	0.61	1,184	0.57	1,074	0.50
금 융 보 험 업	3,032	0.31	2,342	0.26	2,420	0.31	2,551	0.35
부 동 산 업	2,849	0.71	2,401	0.73	2,099	0.65	1,897	0.63
운수통신공익사업	3,178	0.43	3,378	0.44	3,233	0.41	3,010	0.38
서 비 스 업	6,737	0.68	6,830	0.65	6,699	0.58	6,386	0.55
기 타 법 인	1,071	0.29	1,111	0.28	1,089	0.28	1,070	0.24
전 체	61,407	0.41	62,078	0.42	59,451	0.40	54,087	0.38

資料: 財經詳報社, 「日本の 税制」.

연도별로 보면 1991~1994년중 1992년의 교제비 지출액이 6조 2,078 억엔으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며 1993년과 1994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4.23%, 9.02%씩 감소하였다.

3. 英國

영국에서는 기업의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를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 종업원에 대한 지출, 접대를 위한 호텔식사비, 연간 1인당 10파운드 이내의 贈品, 사업과 관련있는 慈善團體에 대한 寄附金 등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에 대한 지출이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접대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업무용 접대비는 법인세액 계산시 손금부인되고, 개인소득세 계산시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상 손금부인한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접대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한가지만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臺灣

업무상 직접 지출되는 交際費는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경우는 각 항목별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며, 한도액은 〈表 V-3〉과 같다. 특히 수출업무를 하여 외국환수입이 있는 경우, 한도액에 추가하여 수출에 의한 외국환수입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特別交際費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表 V-3〉臺灣의 交際費 損金算入 限度

(單位: 千萬NT\$, %)

	계산기준	기준금액	보통신고	청색신고 ¹⁾
물품구입목적	구입가격	3 이하	0.15	0.2
		3 ~ 15	0.1	0.15
		15 ~ 60	0.05	0.1
		60 초과	0.025	0.05
상품판매목적	판매가격	3 이하	0.45	0.6
		3 ~ 15	0.3	0.4
		15 ~ 60	0.2	0.3
		60 초과	0.1	0.15
여객과 화물운송업	운송운임	3 이하	0.6	0.7
		3 ~ 15	0.5	0.6
		15 초과	0.4	0.5
노무 또는 신용제공업 ²⁾	영업수익액	0.9 이하	1.0	1.2
		0.9 ~ 4.5	0.6	0.8
		4.5 초과	0.4	0.6
공영사업	주관기관에서 구분 계산해서 예산에 제상함.			

註: 1) 청색신고제도는 國稅局 또는 회계사에 의해 세무감사를 받은 경우 「營利事業所得稅藍色申報書實施辦法」에 준하여 청색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세무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노무 또는 신용제공업이란 여관, 임대업, 보험업 등을 말함.

資料: 韓相國, 『臺灣의 財政과 租稅制度』, 1995.

5. 各國의 接待費 關聯稅制 比較

〈表 V-4〉는 美國, 日本, 英國, 臺灣의 접대비 손금인정한도액 및 용도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접대비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우리나라의 접대비와 일본, 대만의 교제비는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복리후생비 또는 기부금의 성격을 갖는 지출까지 포함하고 있어 다소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각 나라의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이나 영국은 원칙적으

로 접대비를 손금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사업에 직접 관련 된 접대비라 할지라도 5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밀비제도를 두고 있어 일정금액에 한해서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모두 이러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表 V-4〉各國의 接待費 關聯 制度

	한도액 규제	용도상 규제
한 국	· 기본금액(2,400만원)+자본기준 금액(자기자본의 2%)+매출액기준(100억원 이하: 0.3%, 100~1,000억원: 0.2%, 1,000억원 초과: 0.1%)	· 지출용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음
미 국	· 사업에 직접관련되는 접대비 중 50% 손금인정 · 증정품: 1인당 연간 25달러 · 사업성기부: 1인당 연간 25달러	· 손금인정: 회의를 위한 식사·음료, 사업상의 접대·향응 등, 전문가 및 공공 서비스조직에 대한 회비, 제출서류에 접대일자, 장소, 접대이유, 접대받은자의 이름, 직위 등 기재요함 · 손금부인: 접대용시설(수영장, 사냥용 숙박시설, 테니스장등)과 관련된 비용, 클럽에 대한 회비, 사치성 식사접대
일 본	· 자본금 1천만엔 이하 법인: 연간 교제비 지출액 400만엔에 한해 90% 손금인정 · 자본금 1천만엔 초과 5천만엔 이하 법인: 연간 교제비 지출액 300만엔에 한해 90% 손금인정 · 자본금 5천만엔 이상: 전액 손금 불산입	· 증빙이 없거나 사업무관 접대비는 접대혜택을 본 개인의 소득으로 의제하고, 접대비로 공제할 수 없음
영 국	· 전액손금부인 · 증정품: 연간 1인당 10파운드이내의 광고용품	· 손금인정: 종업원에 대한 지출, 접대를 위한 호텔식사비, 사업관련기부금
대 만	· 매출액 기준(3천만NT\$ 이하: 0.45%, 3천만~15천만NT\$: 0.3%, 15천만~60천만NT\$: 0.2, 60천만NT\$ 초과: 0.1)	· 지출용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음 · 업종별로 매출액기준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 ‘接待費支出明細書提出制度’를 도입하였으나 접대금액 및 접대장소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접대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접대비 지출에 대한 透明性을 確保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금한도액 면에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기준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데 반해 일본은 定額基準이며, 또한 특별히 신용카드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자본금 5천만 엔을 초과하는 기업의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므로 일부 소규모기업에 한해서만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臺灣의 접대비 손금한도 산출방식은 우리나라의 매출액기준과 유사하나 기준금액의 규모나 적용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별도의 기준금액이나 자본금기준금액이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할 때 손금산입한도액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외국환수입이 있는 경우 외국환수입의 2%를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접대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1년 이후 海外接待費에 대해 전액 손금산입한 바 있으나 1995년 세법개정시 일반접대비에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VI. 結論 및 政策方向

1. 長期的 政策方向

接待費 關聯稅制의 政策方向은 접대행위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social costs)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Ⅲ장의 理論的 分析에서 도출된 결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수행하는 접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負(-)의 외부효과는 당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적 비용(private costs)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접대수준은 기존의 수준보다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實證分析에서 도출된 결론에서 보듯이 접대비의 증가가 매출액의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있으나 당기순이익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의 不實化를 조장하고, 競爭力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접대수준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의 稅制는 접대행위에 대하여 일정수준까지 損費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접대비의 손금인정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1997年 稅法改正은 방향이 잘 설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접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비용으로 사치성·향락산업의 비정상적인 팽창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社會的 問題를 지적한 바 있다. 접대행위의 수준이 축소되면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동시에 축소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파생되는 사회문제가 심각할 경우 使用內譯에 대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산입 여부와 연계시키는 短期的이고 直接的인 手段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論議를 바탕으로 接待費 關聯稅制의 長期的 改善方向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접대비 지출의 사용내역과는

상관없이 현재 세제상 용인하고 있는 손금산입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향과, 기존의 손금산입한도는 유지하되 사용내역에 대한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지출에 한해서만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손금산입허용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가. 接待費 損金算入 限度의 縮小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는 기본금액과 자본금기준 금액, 매출액기준 금액의 합계로 이루어지며, 1995년까지는 中小企業과 一般企業에 각각 매출액에 대한 單一比率를 적용하였으나 1995년 세법개정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비율이 적용됨으로써 垂直的 公平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1995년 세법개정의 특징은 그동안 中小企業, 一般企業이라는 분류기준을 폐지하였다는 점이다. 기본금액을 전 기업 동일하게 2,400만원으로 하고,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비율을 적용하여 매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比例的으로 한도액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6년 稅法改正으로 자기자본 적용비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다시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하였다. 0.2%가 적용되는 매출액규모를 1,000억원 이하에서 500억원 이하로 축소하여 1995년 稅法改正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와 관련된 1995년과 1996년 세제의 개정방향은 바람직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대관행이 야기하는 경제적·비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나갈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1997년 稅法改正을 통하여 손금산입 한도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2000년까지 축소되는 규모는 1995년 손금산입 한도 대비 60~80%에 이르고 있다.

1997년 稅法改正의 의도는 접대비지출을 축소하여 財務構造 改善을

통한 競爭力 提高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손금한도 축소의 내용을 보면 기초금액의 축소와 자기자본연계 손금한도의 점진적 폐지, 그리고 매출액 기준비율의 하향조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정책목표로 한다면 자기자본과 연계되어 있는 손금한도 기준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財務構造가 취약한 기업은 그만큼 접대비의 지출을 축소하여 財務構造의 健實化에 노력하라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명료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 接待費 損金認定 要件의 強化 및 部分的 損金算入 許容

稅法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接待費 支出에 한하여 손금을 인정하며, 손금인정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도 일정비율만을 손금산입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정요건의 기준은 접대비 지출의 透明性和 연계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 스스로 접대비를 축소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도 일정비율(예 :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금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 會計의 透明性 提高

제Ⅱ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성격이 불분명한 접대성 경비가 福利厚生費, 販賣促進費, 會議費 등의 명목으로 손금한도액 제한없이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기업은 變則會計處理의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등의 범위를 회계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접대비와 기타경비들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稅務調査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公共法人에 대한 限度 縮小

제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接待費와 관련하여 公企業과 一般企業을 세제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이유는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접대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公企業의 경우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접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公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한도의 대폭적인 축소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1997年 稅法改正에서 公公법인인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한도액의 30%를 추가로 축소하여 기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産業別 · 消費性産業에 대한 稅制上 差別

현행 세제는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접대비한도 계산시 차별화하고 있다. 이는 소비성서비스업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제Ⅲ장의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소비성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이 비소비성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보다 접대비의 지출이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稅制上으로 손금산입한도를 축소하였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차별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의 순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接待費 支出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들 업종에 대한 한도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접대행위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社會的 問題를 고려할 때 업종간에 세제상 차별을 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접대행위를 많이 하여 그만큼 사회에 큰 피해를 입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실을 반영하여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은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衡平性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바. 接待需要의 縮小

본 장에서 論議하는 세제상의 방안들은 접대를 공급하는 주체에 대한 조치이다. 그러나 接待需要가 존재하는 한 기업들은 변칙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접대를 공급할 誘因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접대 수요의 축소 및 근절이 요구된다. 企業間의 접대는 競爭力 提高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 절제해야 할 것이며, 政府에 대한 기업의 접대를 축소하기 위하여는 各種 規制를 과감히 철폐하고, 인·허가 등 정부의 업무에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확실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短期的 政策方向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산출방식은 業種間의 水平的 公平성과 規模別 垂直的 公平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손금한도의 적정수준을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信用卡 義務使用制度和 接待費支出明細書 提出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에 미달할 경우 손금산입범위 내의 접대비 중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에 따라 추가로 접대비를 손금부인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현행 제도에 추가하여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 1人當 接待 限度金額 設定

접대시 1인당 한도액을 설정하여 한도액 이내의 사용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 이는 사치성 지출 억제를 통한 使用內譯 健全化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접대인원을 허위로 過多計上하는 문제가 예상되어 實效性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접대반은 자의 인적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세무행정이 뒷받침된다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高級·奢侈性 業所에 대한 損金不認定

접대비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나친 접대비 지출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 高級·奢侈性 業所 등에서 이루어지는 접대행위들은 사회전반적으로 過消費를 조장하고 유흥·향락산업의 비정상적 팽창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不公正한 競爭의 한 手段으로 惡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급·사치성 업소에서의 접대행위를 손금불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정 업소의 범위는 현행 特別消費稅 과세대상의 유흥음식점을, 특정 장소의 범위는 特別消費稅法에서 규정하는 과세장소(경마장, 증기탕,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接待內譯의 健全化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확대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위장사업자에 대한 세무행정력이 불충분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다. 接待明細提出 義務化

현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接待費支出明細書에는 발생일자, 금액, 지급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다 객관성 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성명, 회사명, 직책 등 접대를 받은 者에 대한 기록이 필요할 것이며,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접대와 관련된 업무내용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納稅協力費用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으나 접대수요를 줄이는 효과뿐 아니라 투명성 확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 信用卡 義務使用比率의 擴大

신용카드 사용은 접대비지출의 근거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접대장소의 과표양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의 확대를 통하여 접대비 지출의 대부분이 신용카드에 의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1998년부터 의무사용비율이 상향조정되었으나 점진적으로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위장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행정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政策組合(Policy Mix) 및 期待效果

본 절에서는 長·短期的 政策方向에서 제시된 방안들의 가능한 정책 조합을 제시한다.

가. 第1案

短期的 政策方向에서 제시된 정책방안들의 도입없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997년 개정세법

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으로부터 향후 지속적으로 축소에 나가는 방안이다.

나. 第2案

제1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단기적 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방안의 조합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면서 접대비 지출에 대한 건전화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단기적 정책방안의 조합은 (가)·(다)·(라) 또는 (나)·(다)·(라)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안의 실행에 따른 납세 협력비용이 문제가 될 경우 (나)·(라) 또는 (가)·(라)의 조합을 하여도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제고 및 유흥·향락업소의 비정상적인 팽창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第3案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 일정비율만을 손금산입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일정요건을 추가 적용하여 한도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한도액 중에서도 일정비율(예 : 50%)만을 손금산입 허용한다. 요구되는 일정요건으로 단기적 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의 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

한도액 중에서 일정비율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경우, 기업 스스로 접대비지출을 축소할 유인이 있으므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第1案에서와 같이 크게 축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방안은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다.

參 考 文 獻

- 오기수, 「接待費 計算基準의 公平性에 관한 研究」, 『月刊租稅』, 第7, 8, 9號, 1996.
- 유재철, 「寄附金과 接待費: 韓·日間 比較」, 『國稅』, 1996. 9.
- 財政經濟院, 『간추린 改正稅法』, 各 年度.
- 趙達英, 『法人稅法精解』, 서울: 租稅通覽社, 1995.
- 租稅通覽社, 『96 租稅便覽』, 1996.
- 韓國信用情報, 『財務諸表』, 1994~1995.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92~1996.
- 韓相國, 『臺灣의 財政과 租稅制度』, 韓國租稅研究院, 1995.
- 森信茂樹(編), 『圖說 日本の稅制』, 財經詳報社, 1994.
-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1993.
- , *US Master Tax Guide*, 1996.

附錄 1. 不動產業, 消費性서비스業의 範圍

가.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 제외), 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함)을 말하며 다음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은 제외됨(법법 § 18의 2① 3가목, 영 § 43②, 규칙 § 18의 2⑤).

- 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 ②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 ③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당해 주택임대사업에 한함)
-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 ⑤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나. 소비성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의 업종을 말하며, ① 내지 ⑦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법법 § 18의 2①3나목, 영 § 43③, 규칙 § 18의 2⑦⑧).

- ① 음식점업
- ② 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조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 제외)
- ③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산업
- ④ 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관련

사업

- 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중 경기 및 오락용품임대업
- ⑥ 욕탕업(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목욕탕 제외)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⑦ 미용업(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것으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 한함)

다.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 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전문 및 종합휴양업
- ②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 ③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및 녹음업
- ④ 체육관운영업 중 체육도장업

附錄 2. 接待費 調整明細書

사 업 연 도	~	접대비등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기밀비 한도초과액 조정		3.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조정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자기자본(㉓50억 한도)×1/100		⑮ 신용카드사용금액		
② 기준수입금액× $\frac{35/10,000}{(5/10,000)}$		⑯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⑮÷⑭)		
③ 기밀비한도액(①+②)		⑰ 신용카드사용비율(⑮/⑯)		
④ 기밀비해당금액		⑱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⑤ 기밀비한도초과액(④-③)		⑲ 신용카드사용미달비율(⑱-⑰)		
⑥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함 (기밀비 ③과 ④ 중 적은 금액)		㉑ 접대비손금불산입액(⑮×⑲)		
2. 접대비한도초과액조정		4. 자기자본 계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⑦ 24,000,000× $\frac{\text{월수}()}{12}$		㉑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		
⑧ 자기자본(㉓50억 한도)× $\frac{2/100}{(1/100)}$				
⑨ 부동산업 등× $\frac{5/10,000}{(1/1,000)}$				
기준 수입 금액	⑩ 100억이하×3/1,000			
	100억~500억×2/1,000			
	500억초과×1/1,000			
	소 계			
⑪ 접대비한도액(⑦+⑧+⑨또는⑩)		㉒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 총계		
⑫ 접대비해당금액				
⑬ 접대비한도초과액(⑫-⑪)				
⑭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⑪ 또는 ⑫ 중 적은 금액)		㉓ 자기자본 $\{(②①-②②) \times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接待費 關聯稅制의 政策方向

孫 元 翼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은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저하와 같은 사적비용(private costs)뿐만 아니라 불공정경쟁, 부실인·허가, 향락산업의 팽창 등 접대행위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전액 손금부인하는 방안과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접대비지출에 한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되 일정비율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의무가 면제되어 접대비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기밀비의 손금산입한도는 1997년 세법개정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접대비와 기타경비간에 회계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접대비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과 동시에 공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접대행위의 수준이 축소되면 접대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비용의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파생되는 사회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용내역에 대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산입여부와 연계시키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단기적 수단으로는 접대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인당 한도액 설정, 고급·사치성 업소에서의 접대비지출에 대한 손금부인, 접대명세 제출의 의무화,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의 확대 등도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Tax Policy Proposals for Entertainment Expenses

Son, Won-Ik

Tax policy proposals for entertainment expenses should be made to minimize both the private costs such as a decrease of a firm's competitiveness and the social costs such as an unfair competition, an abnormal expansion of consumption-oriented industry.

The following long-term policies can be considered; 1) gradually reduce the limit of tax deduction to eliminate the tax deductibility, 2) allow tax deduction for a certain percentage of the entertainment expenses which satisfy certain conditions.

The confidential expenses that are allowed for tax deduction without any evidence have been an obstacle to increase the clarity of entertainment expenses. It is desirable that the tax policy change of this year will reduce the limit of tax deduction and eventually eliminate the tax deductibility.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difference in the accounting definition between the entertainment expenses and other expenses and to reduce the limit of tax deduction for the entertainment expenses of public corporations.

The reduction in the limit of tax deduction for the entertainment expenses will reduce the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the entertainment activity. However, if the social costs are serious, more direct and short-term policies may be applied; control the limit of tax deduction by the contents of entertainment expenses.

The following policies may be considered as the more direct and short-term policies; 1) set a limit of tax deduction for per capita

entertainment expenses, 2) list a range of places where the entertainment expenses spent are not tax deductible, 3) require a full detail of the person(s) whom the entertainment activity is provided, 4) increase the proportion that entertainment expenses should be spent by credit card for tax deduction.